

의안번호	2217336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0.
추계번호	26A1349

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전략수출금융기 금의 설치)	-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함 * 기금은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(안 제4조)	의무규정
2	안 제5조제1항 (수출금융지원계 정의 재원과 용도)	-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음 - 정부의 출연금 -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- 수출금융 지원을 받은 사업 등에서 회수한 자금 -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- 전략수출상생기여금 - 정부,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-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-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	
3	안 제6조 (산업생태지원계 정의 재원과 용도)	-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음 - 중소·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·수출역량 강화 지원 또는 전략수출지원에 따른 출자·투자로부터 회수한 자금 - 정부,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-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-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 (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조제1항 (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)	
3	안 제6조 (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)	

2. 상세사유

- 제정안과 같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, 수출금융지원계정에 정부의 출연금을 출연하거나 수출금융지원계정 및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제정안에 따른 전략수출이란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을 말함
- 다만, 제정안에 따라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에 소요되는 정부의 출연금 및 차입금 규모를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유에 해당
 - 현시점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 등의 전체 규모 및 정부의 출연금과 차입금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 곤란
 - 참고로 2025년말 현재 금융성 기금은 8개가 운용되고 있으며, 자산규모는 46.8조원(2024년말 실적기준)로 나타나고 있음

[표 1] 금융성 기금 현황: 2025년말 현재

(단위: 억원)

기금 명칭	자산규모(2024년 실적)
1. 기술보증기금	49,374
2.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	22,347
3.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	7
4. 무역보험기금	77,467
5.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	11,140
6. 신용보증기금	157,750
7.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	13,713
8.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	136,044
합 계	467,842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기금현황」, 2025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